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62 발의연월일: 2021. 10. 1.

발 의 자:최인호·송옥주·박상혁

위성곤 • 이학영 • 이용호

이원택 · 김병욱 · 전혜숙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상태의 측정·분석·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용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실적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20 20.12)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려 는 것임.

또한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선박의 선장으로 하여금 기름화물이송 작업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작업책임자의 자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3,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 및 제129조).

법률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 중 "선장은"을 "선장은 작업책임자를 지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업계획"을 "작업책임자의 자격, 작업계획"으로 한다.

제110조의 제목 중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오염방지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제3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각각 "형식승인대상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3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형식승인대상설비"로 한다.

제1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0조제1항·제3항"을 "제110 조제3항"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 중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110조제4항"으로,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을 "형식승인·성능시험· 검정"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인증ㆍ검인ㆍ승인"을 "형식승

인·인증·검인·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형식승인· 정도검사·검인·승인"을 "형식승인·검인·승인"으로 한다.

제128조제16호의2 중 "제110조제1항 단서, 제3항"을 "제110조제3항"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형식승인대상설비"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1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 관리) ①・② (생 략)	이송 관리)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에 따른 해역·수역 안에서 선	
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u>선장은</u> 작업계	<u>선장은 작업책임자</u>
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u>를 지정하고,</u>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4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 대	
상선박 및 검인절차, 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작업의 기록, 제3항에 따른 <u>작</u>	<u>작</u>
업계획의 보고사항 및 보고방	업책임자의 자격, 작업계획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u>해양환경측정기기</u> 등의	제110조(<u>해양오염방지설비</u> 등의
형식승인 등) ① 제12조제1항	형식승인 등) <u><삭 제></u>
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	
·분석·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기(이하 "해양환경측정기기" 라 한다)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 ·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 <u>으로 제작·수입하는</u> 해양환경 측정기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 | <삭 제> 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표준용액 · 표준가스 등 표준물질(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ㆍ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3 • 4	(현행과	같음)
-------	------	-----

(5)	 	 	 -
	 - <u>제3항</u> -	 	 -
	 	 	 _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 로부터 <u>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u> 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 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 다.

⑥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에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합격한 것으로 본다.

⑦·⑧ (생 략)

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 경찰청장은 <u>제1항ㆍ제3항</u>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 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기준에 미달하는 <u>해양환경측</u> 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 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때 4. (생 략)
-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 3. (생략)
 - ② (생 략)
-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② (생 략)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 경찰청장은 제110조제1항·제2

·
1. • 2. (현행과 같음)
3 <u>형식승인대</u>
<u> 상설비</u>
4.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u>제110조제3항</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0조제4항

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 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22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인증·검 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검사·성능시험·검정·인정·검증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u>형식승인·성능시</u> <u>험·검정</u>
<u>ਚ ´u´ö</u>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수수료) ①
<u>형식승인 · 인증 · 검인 · 승인</u>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정도검사·검인
·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검사·성능시험·검정·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략)

16의2. 제110조제1항 단서, 제3 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해양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 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 제를 판매한 자

17. · 18. (생 략)17. · 18. (현행과 같음)제129조(벌칙) ① (생 략)제1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4
<u>형</u> 식승인·검인·승인
제128조(벌칙)
<u>.</u>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u>제110조제3항</u>
<u>형식</u>
승인대상설비
17.・1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2.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 니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정용품을 공급 •사용한 자 13. 제11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 13. 제110조제3항------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 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

14. ~ 16. (현행과 같음)

•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4. ~ 16. (생략)